|  |  |  |
| --- | --- | --- |
| **《기업정보공시 잠정 조례》**  **관철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공상외기자(工商外企字)〔2014〕16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시장감독관리부문 :  국무원이 발표한《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이하 《조례》로 약칭）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공상총국이발표한《경영 이상 명부 관리 잠정방법》, 《기업공시정보 샘플링검사 잠정 방법》 등 5개 규정도 이와 동시에 시행한다. 《조례》와 규정의 발표 시행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중간 진행과정 및 사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개혁조치이며 정부의 감독관리방식 전환, 빅 데이터 등 수단을 활용해 감독관리 수준 제고, 사회 신용체계 건설 가속화, 시장경제질서 유지 과정에서 신용이 기초적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조례》와 규정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공지한다 :  1. 기업정보 공시 내용을 규범화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과 시장감독관리부문(이하 각급 공상부문으로 약칭)은《조례》 규정과 공상총국의 관련 요구에 따라 기업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등록, 기록(備案)정보외, 《조례》 시행전 형성한 기타 기업정보는 공시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례》 실시전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한 기업은 명칭, 등록번호, 말소시간을 공시하고 ‘기말소’로 표기한다.  각급 공상부문이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미 공시한 2014년 2월 28일전에 설립한 기업의 납입자본 및 주주(발기인)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과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등 기업주주의 출자정보 변경 사항은 기 존 공상부문이 사회에 공시하던데서 기업이 사회에 공시하는것으로 변경된다.  기업의 납입자본 및 주주(발기인)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과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등 기업주주(발기인)의 출자정보는 2014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변경사항 발생시 기업이 2014년 12월 31일전에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2014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변경사항은 기업이《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상기 규정외, 《조례》 제10조가 규정한 기업정보 공시 상황, 예를 들면 기업정보가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형성되었을 경우,기업이 공시하도록 강제로 요구하지 않는다.  2. 기업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 공시 업무를 잘해야한다. 《조례》 시행시간때문에 기업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상부문에 2013년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부문은 관련 홍보를 잘하여 규정한 시간내 기업의 연차보고서 공시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2014년 연차 보고서는 《조례》 규정에 따른다. 기업은 2013년 연차보고서를 제출 및 공시한 후 2014년 연차보고서를 제출 및 공시해야 한다. 2014년 2월 28일까지 기업이 기존 규정대로 연례검사 수속을 하지 않았고 공상부문이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 및 공시해야한다.  《조례》 제9조가 규정한 (1), (2), (6)번 정보는 기업이 연차보고서 제출시의 정보이고 기타 정보는 기업의 연차보고서 해당연도의 12월 31일자 정보이다.  3. 자영업자, 농민전문합작사의 연차 보고업무를 잘 진행해야한다. 자영업자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상부문에 2013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자영업자 2014년 연차보고서는《자영업자 연차보고서 잠정 방법》 규정에 따른다. 자영업자가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려고 할 경우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연차보고서를 제출 및 공시하면 된다. 자영업자가 공상부문에 연차보고서를 서면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공상부문은 서면 연차보고서 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내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영업자가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2014년 2월 28일까지 자영업자가 기존 규정대로 연간 정기검사 수속을 하지 않았고 공상부문이 사업자 등록증 취소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민전문합작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농민전문합작사 연차보고서 공시 잠정 방법》 규정에 따라 2014년 연차보고서 제출 및 공시해야 한다.  《자영업자 연차보고서 잠정방법》 제6조 제(3), (4)번 정보, 《농민전문합작사 연차보고서 공시 잠정 방법》 제5조 제(4), (5)번 정보는 연차보고서 제출시의 정보이고 기타 정보는 연차보고서 해당연도의 12월 31일자 정보이다.  4. 기업공시정보 샘플링 검사업무를 규범화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부문은 현지 실정에 따라 최소 3% 비중으로 관할지역 내 샘플링 검사 대상기업 명단을 확정한다. 샘플링 검사 기업대상은 관할지역내 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되지 않은 존속기업이며 규정에 따라 시한내 연차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아 경영이상명부와 엄중한 위법기업 명단에 오른 기업은 샘플링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부문은 샘플링 검사 기업명단의 공평과 규범화를 보장해야 하며 각 등록기관 샘플링 검사 기업수의 균형성도 중시해야 한다. 각급 공상부문은 현지 실정에 맞게 사회역량에게 서비스를 의뢰하는것을 검토 및 추진하고 샘플링 검사 과정중 제3자 기구에 위탁하여 업무를 전개하는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농민전문합작사 연차보고서 공시정보의 샘플링검사는《자영업자 연차보고서 잠정 방법》과 《농민전문합작사 연차보고서 공시 잠정 방법》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부문이 조직하여 실시한다.  5. 신용규제와 행정처벌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경영이상명부 또는 엄중한 위법기업 명단은 기업에 대한 신용규제에 속한다. 이와 동시에 기업이 위법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공상부문이 행정처벌을 내려야 할 경우 공상부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조치를 내려야 한다.  6.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 구축을 완성토록 보장해야 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공상부문은공상총국이제정한《공상등록제도 개혁 정보화 건설 기술방안》(잠정),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데이터 규범》(잠정),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양식 규범》(잠정) 등 기술규범 요구에 따라 관할지역내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건설하고 10월 1일 전까지 개발 및 테스트를 반드시 완성하여 시스템이 예정된 시간에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7. 공시정보 데이터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공상부문은 공시정보 품질을 강화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부문은 관할지역내 기업공시정보의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공시시스템이 수집한 연차보고서 정보 및 기업 실시간 정보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한 정보와 기타 부문 공시정보를 적기에 업데이트하고 공상전용시스템에 접속되도록 해야 하며《공상행정관리 데이터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매일 공상총국에 업로드해야 한다.  8. 공시시스템의 안전 보장업무를 잘해야 한다. 각급 공상부문은 데이터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자데이터 백업을 잘해야 한다. 공시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공시정보를 불법으로 수정하고 불법으로 획득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정보안전과 경제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자 사업자 등록증을 정식 시행하기전에 각지는 관련 조치를 취하여 기술보장을 제공하고 기업등록 시스템의 신분인증을 잘하여 기업정보공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한다.  9. 공상 연락원(工商联络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각급 공상부문은 공상연락원 제도를 적극 구축 및 보강하여 공상연락원이 연락소통, 기업사무에 편이성 제공, 업무 효율 제고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정보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상총국은 공상연락원을 기업이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의 하나로 확정하여 공상연락원에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다. 공상연락원에 대한 교육을 잘하여 공상연락원이 관련 법률법규 규정을 장악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익숙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사전에 업무배치를 잘하여 공상연락원의 1차 확인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10. 《조례》 시행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각급 공상부문은 효과적인 교육업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등록, 기업감독관리, 자영업자등록관리, 시스템운영을 담당하는 간부가 기업공시정보의 프로세스와 요구를 익숙히 장악하여 기업공시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응하고 기업이 관련 작업을 완성하도록 지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 공상부문 간부는《조례》의 기본정신을 터득하고 기업이 제출한 일반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조례》가 규정한 각 항목 제도를 심층 이해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 배치를 잘하여 기업의 자문서비스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신문, 사이트 등 각종 방식을 통해 사회공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감독을 강화하여 《조례》의 안정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11. 부서간 협력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공상총국은 국가사회 신용정보 플랫폼건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무원 관련부서와의 소통 조율을 강화하고 기업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각급공상부문은《조례》 요구에 따라 관련 행정부문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체제를 구축 및 보강한다.  12. 《조례》 시행의 조직 영도를 강화한다. 각급공상부문은 사회신용체제 건설 가속화와 사회신용제도 구축 차원에 입각하여《조례》 집행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간주해야 한다. 관할지역내 구체 실행방안을 제정하고 전문기구를 지정하며 담당인력을 확보하고 명확한 R&R를 정립하며 책임추궁체제를 구축한다. 각급 공상부문 감사기관은 기업정보 공시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한다. 공상총국은 매년 각지역의 기업 연차보고서, 공시정보 샘플링검사, 데이터품질 건설 등 기업정보 공시업무의 전개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정기통보 및 평가제도를 구축하여《조례》 관련 각종 업무가 제대로 집행하도록 보장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부문은 《조례》 시행 상황 및 법 집행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적기에 공상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14년 9월 2일 |  | **关于贯彻落实《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有关问题的通知**  工商外企字〔2014〕166号  各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市场监督管理部门：  　　《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以下简称《条例》）已由国务院发布，将于2014年10月1日起实施。工商总局颁布的《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企业公示信息抽查暂行办法》等五部规章，也将同日实施。《条例》和规章的颁布实施，是工商行政管理部门加强事中事后监管的重要改革举措，对于转变政府监管方式，运用大数据等手段提升监管水平，加快社会诚信体系建设，充分发挥信用在维护市场经济秩序中“基础桩”的作用，具有重要意义。为确保《条例》和规章的顺利实施，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规范企业信息公示内容。各级工商行政管理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以下简称各级工商部门）应当根据《条例》规定和总局相关要求公示企业信息。除企业登记、备案信息外，《条例》实施前形成的其他企业信息不纳入公示范围。《条例》实施前已被吊销营业执照的企业，公示其名称、注册号、吊销日期，并标注“已吊销”。  　　各级工商部门已经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的2014年2月28日前已设立公司的实收资本及股东（发起人）认缴和实缴的出资额、出资方式、出资期限等公司股东（发起人）出资信息发生变动的，从之前由工商部门向社会公示转由公司向社会公示。  　　公司的实收资本及股东（发起人）认缴和实缴的出资额、出资方式、出资期限等公司股东（发起人）出资信息在2014年3月1日至9月30日期间发生变动的，公司应当于2014年12月31日之前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2014年10月1日以后发生变动的，公司应当按照《条例》第十条的规定向社会公示。  　　除上述规定外，《条例》第十条规定的企业信息公示情形，如企业信息形成于《条例》实施前的，不强制要求企业公示。  　　二、做好企业年度报告公示工作。因《条例》实施时间的原因，企业应当于2014年10月1日至2015年6月30日，向工商部门报送2013年度报告并公示，各级工商部门应当做好相关宣传工作，按照规定的时间开展企业年度报告公示工作。2014年度报告按照《条例》的规定办理。企业应当报送2013年度报告并公示后，再报送2014年度报告并公示。截至2014年2月28日，企业未按照原有规定办理年检手续，但工商部门未作出吊销营业执照决定的，应当依法报送年度报告并公示。  　　《条例》第九条规定的第（一）、（二）、（六）项信息，为企业报送年度报告时的信息；其他信息为企业所报告年份12月31日的信息。  　　三、做好个体工商户、农民专业合作社年度报告工作。个体工商户应当于2014年10月1日至2015年6月30日，向工商部门报送2013年度报告。个体工商户2014年度报告按照《个体工商户年度报告暂行办法》的规定办理。个体工商户选择公示年度报告的，应当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报送年度报告并公示。个体工商户向工商部门报送纸质年度报告的，工商部门应当自收到纸质年度报告之日起10个工作日之内，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该个体工商户已报送年度报告。截至2014年2月28日，个体工商户未按照原有规定办理验照手续，但工商部门未作出吊销营业执照决定的，应当依法报送年度报告。农民专业合作社自2015年1月1日起，按照《农民专业合作社年度报告公示暂行办法》的规定报送并公示2014年度报告。  　　《个体工商户年度报告暂行办法》第六条第（三）、（四）项信息，《农民专业合作社年度报告公示暂行办法》第五条第（四）、（五）项信息为报送年度报告时的信息；其他信息为所报告年份12月31日的信息。  　　四、规范企业公示信息抽查工作。省、自治区、直辖市工商部门根据本地实际按照不少于3%的比例确定辖区内抽查企业名单。抽查企业对象为辖区内未吊销的存续企业，因未按照规定期限公示年度报告被列入经营异常名录和严重违法企业名单的企业，不列入抽查对象。省、自治区、直辖市工商部门应当保证抽查企业名单的公平规范，并注重各登记机关抽查企业户数的均衡性。各级工商部门要结合本地实际情况，研究推进向社会力量购买服务，规范抽查中委托第三方机构开展工作的行为。  　　个体工商户、农民专业合作社年度报告公示信息的抽查，按照《个体工商户年度报告暂行办法》和《农民专业合作社年度报告公示暂行办法》的规定，由省、自治区、直辖市工商部门组织实施。  　　五、正确处理信用约束和行政处罚的关系。企业被列入经营异常名录或者严重违法企业名单，属于对企业的信用约束。对于企业同时存在违法违规行为依法应由工商部门行政处罚的，工商部门应当根据相关规定实施行政处罚。  　　六、确保完成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建设。各省、自治区、直辖市工商部门应按照总局制定的《工商登记制度改革信息化建设技术方案》（暂行）、《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数据规范》（暂行）、《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格式规范》（暂行）等技术规范的要求，做好本辖区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建设，务必于10月1日前完成开发和测试，保证系统按时上线运行。  　　七、加强公示信息数据管理。各级工商部门要加强公示信息质量建设，省、自治区、直辖市工商部门应当做好本辖区内企业公示信息质量的检查工作。要及时将公示系统采集的年报信息、企业即时信息等企业自主公示信息以及其他部门公示信息更新、交换到工商专网业务系统，并按照《工商行政管理数据管理办法》的规定每日上传总局。  　　八、做好公示系统的安全保障工作。各级工商部门要加强数据安全管理，做好电子数据备份。加强对公示系统的运营管理，防范非法修改、非法获取公示信息等行为，确保信息安全和经济安全。在电子营业执照正式推广前，各地应采取相关措施，提供技术保障，做好企业登录系统的身份认证，保障企业信息公示的正常开展。  　　九、充分发挥工商联络员作用。各级工商部门要积极建立完善工商联络员制度，充分发挥工商联络员在联系沟通、方便企业办事、提高工作效率方面的积极作用。为了保证信息安全，总局确定了工商联络员作为企业登录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的方式之一，赋予了工商联络员新的职能。要认真做好工商联络员培训工作，使其能了解相关法律法规规定，熟悉操作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要提前做好工作安排，满足工商联络员进行首次确认的需求。  　　十、加强《条例》实施的宣传培训工作。各级工商部门要建立有效的培训工作机制。通过培训使登记注册、企业监管、个体工商户登记管理、系统维护的干部能够熟悉企业公示信息的流程及要求，能够回答企业在公示中遇到的问题并能指导企业完成相关操作；全国工商系统干部要领会《条例》的基本精神，能够解答企业提出的一般问题；企业能够深入了解《条例》规定的各项制度，能够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报送企业信息。要做好工作安排，满足企业对咨询服务的需要。要通过报纸、网站等各种方式，加大对社会公众的宣传力度，强化社会监督，保障《条例》的平稳实施。  　　十一、积极推动建立部门协作机制。总局按照国家社会信用信息平台建设的总体要求，加强和国务院有关部门的沟通协调，推动企业信息的互联共享。各级工商部门要按照《条例》的要求，加强与各地有关行政部门的沟通和协作，建立和完善信息共享机制。  　　十二、加强《条例》实施的组织领导。各级工商部门要站在加快社会信用体系建设，建立健全社会诚信制度的高度上，把贯彻实施《条例》作为当前工作的首要任务。认真制定本地区具体贯彻实施工作方案，指定专门机构，确保人员配备，明确责任分工，建立追责机制。各级工商部门监察机关要加强对企业信息公示工作的监督。总局每年对各地企业年度报告、公示信息抽查、数据质量建设等企业信息公示工作的开展情况进行检查，建立定期通报及考核机制，确保贯彻《条例》的各项工作有序开展。  　　各省、自治区、直辖市工商部门要把贯彻实施《条例》的情况以及执行过程中发现的问题及时汇总上报总局。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2014年9月2日 |